

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458호(2008.12.18.)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47호(2010.12.9.)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1-52호(2011.7.28.)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, 2009.10.9. 조합설립인가 되어, 성동구 제2011-103호(2011.12.22.)로 사업시행인가된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임대주택 대상자,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5. 8. 5.

성 동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2015년 8월 6일 ~ 2015년 8월 21일(14일 이상)

나. 공람장소 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전화 : 2286-6566)

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전화: 2281-0339)

다. 사업내용

1) 사업명칭: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) 위 치: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

- 3) 면 적: 50,048.3㎡
- 4) 시 행 자: 행당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
- 5) 사업 계획: 공동주택 7개동 / 1,034세대(임대 176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 등
- 6) 주요 변경사항

- 건축 연면적 변경: 163,820.98㎡ → 164,998.90㎡(증 1,177.92㎡)
 - 건 폐 율 19.70% → 18.40% (감 1.30%)
 - 용 적 률 279.96% → 280.89%(증 0.93%)
- 평면도
 - 배치도: 조경변경, 부대복리시설 형태변경
 - 단위세대: 내부벽체 변경으로 인한 발코니 변경
 - 지하주차장: 주차면수 일부 조정
 - 부대복리: 지하층 및 1층 평면 및 시설위치 변경
- 입면도
 - 평면 변경에 의한 입면 변경
- 단면도
 - 층고변경: 2층 이상 2.8m → 2.9m, 1층 필로티 6.4m → 3.9m
- 사업비 변경: 당초 294,192,881,000원 → 변경 321,637,010,500원
- 세입자 대책 변경
 - 임대주택 공급세대: 당초 320 → 316
 - 주거이전비 지급세대: 당초 414 → 476
 - 비대책세대: 당초 617 → 584

7) 공람도서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

라. 주요 공람사항 : 사업시행변경 계획서